

제주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토론편

김 나 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

I. 『제주도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과 관리』에 대한 토론편

이 글은 제주도 문화재를 비롯한 제주만의 특이성을 지닌 다양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계승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 갖춰야 할 제도(정책)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대학교때부터 현재까지 축적해 온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현 제주도의 문화재행정의 현 실태를 고찰·분석함은 물론, 정립·보강·개선·도입(확대)해야 할 여러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주도 문화재행정에 몸담고 있는 저에게 있어 해당 발표는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제주도 문화재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논고의 내용 중 토론자의 궁금한 점 및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적인 문화재 관련 조직의 구성

II장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 체계화를 논하면서 3절 문화재의 관리체계 개선, 즉 문화재 행정 조직체계의 개편(확장, 세분화, 전문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주도 문화재 업무는 2016년 7월 28일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서 이뤄졌던 문화재 보수, 정비 등의 전반적인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로의 일괄, 통합되면서 현재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요컨대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업무가 하나로 일원화되면서 문화재의 유형별로 어느정도 기준화된 지정·보수·정비체계 시스템 구축 및 민원처리의 통일성 및 체계화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문화재 관련 조직의 구성은 어떠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조직현황

담당과	팀명	직원수 (공무직제외)	담당업무
세계유산정책과	행정운영팀	팀장 등 7명	행정전반
	문화유산정책팀	팀장 등 5명	매장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세계유산관리팀	팀장 등 4명	세계유산관리 및 센터 운영
역사문화재과	-	팀장 등 7명	역사문화재 지정 및 관리, 보수
자연문화재과	기념물팀	팀장 등 5명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보수
	일출봉관리팀	팀장 등 4명	일출봉 관리, 운영
	만장굴관리팀	팀장 등 3명	만장굴 관리, 운영
	비자림관리팀	팀장 등 4명	비자림 관리, 운영
	한라전시관	팀장 등 2명	한라전시관 운영
문화유적관리과	목관아팀	팀장 등 5명	목관아 관리, 운영
	항몽유적팀	팀장 등 4명	항몽유적지 관리, 운영
	성읍민속마을팀	팀장 등 4명	성읍민속마을 관리, 보수 등
	추사적거지팀	2명(팀장공석)	추사전시관 운영, 관리
	삼양동유적팀	1명	삼양동유적 운영, 관리

2. 제주도만의 독자적 문화재 수리 품셈 및 시방서 개발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

Ⅲ장 1절에서 제주도 문화재의 특수성, 다시 말해 제주만의 환경적 요소가 빚어낸 개별 문화재가 지닌 재료 및 조성기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문화재 수리 품셈 및 시방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례 및 예시가 없어 추상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 문화재만이 지닌 독자적인 재료와 조성기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또한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의 문화재는 지역별 지리적·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산물임에 따라 이는 제주도만 한정지어 수리 품셈 및 시방서를 개발하여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문화재 수리 품셈 및 시방서가 만들어질 시에 현재 적용되어지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과의 상충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제주도 문화재수리업의 현 실태 및 개선 가능 여부

Ⅲ장 2절에서 도내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주도를 비롯한 제주도 문화재에 대한 지식(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마도 문

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을 지닌 분들 대부분이 타지역 출신이 많은 까닭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자격을 지니지 못한 일반 기능자가 문화재 관련 시공의 현장대리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 이전에, 현 제주도 문화재수리업체에서 상기 사항을 타개할 해결책은 없는지요?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시 문화재수리업체에서 그 필요에 의해 제주도내 기능공(돌쟁이, 초가장 등)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발표자께서는 어떠한 분야의 기능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19년 11월 현재 제주도내 문화재 수리업 현황(5개 분야)

- 실측설계업 1개소, 보수단청업 8개소, 조경업 6개소, 식물보호법 8개소, 보존과학업 2개소

4. 구부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

Ⅲ장 3절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목재 및 석재(자연석), 흙 등의 공급 부족으로 문화재 원형성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석축 문화재(성곽, 환해장성, 연대 등)인 경우 해당 문화재의 돌(구부재)을 대부분 이용해 보수하는 형편(*성읍 마을인 경우, 해당 마을내 돌집 해체시 돌을 공유지에 적재해 놓고, 향후 문화재 보수시 사용하고 있음)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철거 및 보수되는 옛 초가 등의 건조물의 구부재를 분리해 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목조 문화재(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 차원에서 다량의 것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까닭에 구부재의 또 다른구조적 결함 초래(구부재의 보관·관리에 많은 비용 소요예상) 및 타 부재의 사용시 규모 등의 이질감이 발생될 우려 등으로 구부재의 재활용은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비지정 문화재(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유산 및 문화재 지정 추천 대상

2013년 향토유산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제주도만의 향토적 특색 및 가치를 지닌 대상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대불, 거옥대(방사탑), 갯성(가시리 갯성), 봉수, 환해장성 등 5개 분야·23개소에 대해 향토유형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문화재(향토유산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발표자께서 지정 추천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II. 『제주도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토론문

이 글은 제주도 매장문화재의 분포와 연도별 조사 현황,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매장문화재(유적)의 활용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조사·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본 논고의 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및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의 정확한 통계

II장 2절에서 제주도내 두 기관(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주고고학연구소는 46곳의 유적에 대한 46집의 보고서를,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80개 유적에 대해 77집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주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는 총 123집이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 3>의 제주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시대별 구분을 보면 총 159집이 발간되었다고 적고 있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발간 발굴조사 보고서의 통계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와 관련, 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연도별 발간현황(통계) 및 조사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제주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기한은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발굴조사 완료 후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해당 발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됩니다. 발굴조사 완료 후의 유구·유물 실측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해당 발굴조사의 후속조치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요?

3. 제주도 매장문화재 중 지식묘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요청

제주도 문화재 중 지식묘인 경우, 도 기념물 제2호 41기(제주시 25기, 서귀포시 16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현재까지 파악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식묘는 42기(제주시 23기, 서귀포시 19기)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식묘 주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건축행위(높이 제한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문화재의 특성상 개별 안내판만 놓여 있을 뿐, 타 매장문화재와 달리 활용(활성화)되는 측면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부 사유재산권에 제약받고 있는 주민들은 도내 지식묘를 한 곳(돌문화공원 등)으로 이관하여 전시 및 교육체험의 효과를 높이라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상기 의견처럼 지식묘의 이관이 가능한지, 또한 도내 지식묘의 활용 차원에서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도 기념물 제2호 「지식묘」 41기

- 제주시(25기): 용담(4기)·오라(1기)·도련(2기)·삼양(1기)·외도(5기)·광령(6기)·하귀(2기)·광령(4기)
- 서귀포시(16기): 창천(1기)·신예(2기)·상예(5기)·색달(1기)·하모(1기)·동일(4기)·일과(1기)·화순(1기)

Ⅲ. 『제주도 유형문화재의 보존-목조와 석물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제주도의 목조문화재는 총4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근 제주향교 내 목조 건축물들이 흰개미로 인한 피해 발생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현재까지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요, 적극적이고 명확한 해결점이 아니지만, 흰개미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대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안들을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Ⅳ.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전승보전 방안』에 대한 토론문

제주도내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재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2013.5.15. 제정)에 의거, 향토무형유산 6인의 기능보유자(원래는 9인이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지정 해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향토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와의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향토무형유산 6인 중 도 무형문화재로의 승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향토무형유산 현황

종별	명칭	기능보유자	지정일
향토무형유산 제1호	시조창	강종화	13.12.17
향토무형유산 제2호	제주어 구사능력	고봉만(사망)	
향토무형유산 제3호	수의와 부수품 제작	김경생(사망)	
향토무형유산 제4호	제주여성노동요	김태매(사망)	
향토무형유산 제5호	회심곡	양금여	
향토무형유산 제6호	예래마을 새앗이기는 소리	강승화	
향토무형유산 제7호	강정마을 논다루는 소리	윤경노	
향토무형유산 제8호	제주창작무(좁녀춤·물허벅춤)	이연심	
향토무형유산 제9호	조천읍 서우젯소리	이용옥	